

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(2026. 8. 28.)에서
의결된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
공포한다.

2026년 8월 28일

화순군의회 의장 김 석 봉



화순군의회 규칙 제67호

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

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”를 “「모범공무원 규정」
제8조의 2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하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
1일 이후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